

## 부천시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8. 12. 15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8. 12. 16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  - 제67회 부천시의회(정기회) 제14차 위원회(1998. 12. 23) 상정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과장 권병준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조례의 제정근거인 상위법의 관련조문이 폐지되고 또한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
-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근거가 불명확하게 운용되고 있는 규제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심사 정비하기 위한 제1회 “부천시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”에서 폐지하기로 의결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골자

“동조례 폐지”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토지구획정리부담금을 징수한 실적은?</li> <li>○ 하자있는 조례를 73년 제정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?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조례의 많은 부분이 문제를 안고 있어 부담금을 징수한 실적이 없음</li> <li>○ 동조례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어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음.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.</li> </ul>

### 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
  - 없음
- 나. 반대토론
  -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

의안번호	제 87 호
의결년월일	98. 12. 26 (제67회)

제출년월일 : 1998. 12. 15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폐지이유

- 조례의 제정근거인 상위법의 관련조문이 폐지되고 또한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,
-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근거가 불명확하게 운용되고 있는 규제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심사정비하기 위한 제1회 「부천시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」에서 폐지하기로 의결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“동조례 폐지”

첨부

- 부천시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

부천시 조례 제 호

부천시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

부천시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